

## 취업비자 (1년) Visa Negocios Multiples con Fines Laborales (NM1)

취업비자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정식으로 등록된(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현지 회사에 최소 1년 이상 근로의 목적으로(근로계약체결로 인한) 체류 해야 하는 경우로 1년 기간이 기본이며 근로 계약의 기간에 따라 1년마다 현지 이민청에서 갱신 할 수 있는 비자 입니다. 이 비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가족이 함께 도미니카공화국에 거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반비자(DPM-1년) 비자가 발급 됩니다.

(단기거주비자에 해당함- Residencia Temporal)

### 중요사항 1,2,3 반드시 숙지 부탁드립니다. (현재 문서 4페이지)

-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화로 2258 외교센터 6층 (양재역 12번출구)  
(홈페이지 참조) <https://www.apostille.go.kr/index.do?language=ko>

#### 1. 비자 사유서 (Carta de solicitud de visa sin notarizar) – 법무공증 필요 없음 (스페인어로 작성)

해당 대사관의 영사과 앞 혹은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 앞으로 신청자나 혹은 회사 대표자가 작성. 비자 신청인의 국적, 거주지, 직업, 도미니카공화국으로의 방문 목적, 귀속될 회사의 이름, 귀속될 회사에서 갖게 될 직책 등을 기재. 회사 대표자가 피고용인의 비자를 신청하는 서신일 경우엔 회사 혹은 귀속된 기관의 로고가 있는 레터지 혹은 귀속된 회사의 도장이 찍혀있어야 함.

신청인 본인이 작성할 경우 동 문서 예문 참고: 5-6 페이지 참고.

#### 2. 비자신청양식서 (Formulario de Visa):

대사관홈페이지 [www.embadomkr.gob.do](http://www.embadomkr.gob.do), 도미니카공화국 영사홈페이지 [www.consuladord.com](http://www.consuladord.com) 에서 출력.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읽기 쉬운 활자체로 작성하여야 하며, 빈 공란이 없이 모두 기재. (양쪽 검지 지문, 서명 포함 그리고 미성년의 경우도 서명란에 이름으로 표기), 대사관 비치용 사용 가능.

#### 3. 사진 (Una fotografia):

1 매 (사이즈 4cm x 5cm) 정면 사진으로 흰 바탕, 안경 미착용

#### 4. 여권 원본 (Pasaporte Original):

최소 18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 5. 근로자 등록 제안서(Propuesta de trabajo registrada en el ministerio de trabajo):

도미니카공화국 노동부에 '노동부 확인서(Certificación del Ministerio de Trabajo)'를 받기 위해 회사 고용주가 도미니카공화국 노동부에 제출한 서신으로 이 제안서에는 피고용인의 직책, 월급 등등 기타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미니카공화국 현지 회사에서 스페인어로 작성하고 노동부 확인서에 같이 동반되는 서류임)

#### 6. 도미니카공화국 노동부 확인서(Certificación del Ministerio de Trabajo):

**반드시 비자 신청일 최소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문서야 합니다.**

고용주 회사가 도미니카공화국 노동부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고(SIRLA), 피고용인이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정식으로 고용된 회사의 직원임을 도미니카공화국 노동부에서 확인해주는 확인서.

이 확인서를 도미니카공화국 노동부에 요청하실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Contrato de Trabajo)와 근로자 등록 제안서(Propuesta de trabajo registrada en el ministerio de trabajo)를 제출하여야 함.

[확인서 받을시 근로자의 간단한 이력서나(CV) 라이선스등을 제출해야 할 것임]

**7. 주민등록증 (Documento Nacional de Identidad):**

주민등록증 컬러 사본, 만약 출생 국가가 아닌 다른 제2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해당 국가의 거주증 사본

**8. 도미니카공화국 비자 혹은 도미니카공화국 거주증 (Visas dominicanas o tarjeta de residencia):**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과거에 받은 도미니카공화국 비자가 있거나, 거주증이 있었다면, 사본 제출.

**9. 범죄기록조회서(Certificado de No Antecedentes penales):**

관할 기간에 요청하여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공적 문서로 최근 5년 거주한 국가의 경찰청 혹은 (연방국가의 경우 연방당국) 으로부터 확인 받은 문서 제출.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필요함

**10. 기본증명서(Certificado Básico) 혹은 출생증명서(Acata de Nacimiento):**

주민자치센터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문서.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필요함

**11. 건강진단서 (Certificado Médico):**

신청인이 전염성이 있는 병력을 앓았던 적이 없음을 증명해야 함.

신청인이 마지막으로 거주한 해당 국가의 병원이나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인 받음.

(건강진단서 :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폐결핵, 매독/ AIDS)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필요함

**12. 보증서[Carta de Garantia]:** 보증인과 2인의 증인이 보증서에 서명해야 하며, 보증서 내용은 보증인이 비자 신청인에게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체류도중 일신상의 이유로 송환 또는 추방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있어서 보증인이 책임질 수 있다는 내용.

취업자는 고용인 회사 고용주(혹은 상응하는 책임자)가 보증인이 되어야 하며 도미니카공화국 검찰청의 인증을 받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불필요 합니다.)**

\*\*회사 고용주(상응하는 책임자)가 보증인일 경우, 도미니카공화국 거소증 & 주민증 & 여권 사본 & 재정증빙서류가 동반되어야 하고 또한 회사 사업자등록증(SRLA) 동반 제출 되어야 합니다.

**\*\*아래 네모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보증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입니다. :**

**Carta de Garantía, Debidamente Notarizada y legalizada en la Procuraduría General de la**

República, este documento debe de ser presentado por el solicitante junto a los demás documentos el día de su entrevista en el consulado dominicano, es indispensable que esta carta de garantía contenga la siguiente cláusula, para que pueda ser aceptada por nuestra misión diplomática o consular:

### CLAUSULA DE GARANTIA

“Garantizo que (nombre, nacionalidad y pasaporte), no permanecerá en la República Dominicana más tiempo que el concedido por la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ni solicitará residencia o cambio de estatus migratorio desde el territorio dominicano, dedicándose exclusivamente a la actividad por la cual le fue otorgado el visado. **“Me hago moral y económicamente responsable al retorno de su país de origen**, asumiendo pagar a favor del Estado Dominicano cualquier gasto en que dicha persona pueda incurrir durante su estancia en el país, o que se origine como consecuencia de su repatriación o deportación del mismo”.

### 13. 재정증빙서류(Documentos que demuestran solvencia económica):

- 보증인(고용주 회사)의 은행잔고증명서: 영문 혹은 국문(국문의 경우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 보증인(고용주 회사)의 재산,소득등의 증빙서류- 영문 혹은 국문(국문의 경우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위의 서류중 택 1-----  
-----

- 신청인의 재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의 것 - 은행잔고, 재산증명서 중 택 1: 영문 혹은 국문(국문의 경우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 14. 이력서 (Curriculo Vitae):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

### 15. 대학 졸업 증서 (Título Universitario): 영문으로 제출

### 16. 비자 인터뷰 신청 (모든 영사 업무는 오전만)

전화나 이메일로 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일을 예약하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인터뷰해야 함.

### 17. 비자발급 소요시간 (모든 영사 업무는 오전만)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하여 비자가 승인된 것은 아니며, 신청접수는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 영사과에서 신청인의 비자를 접수하고 검토하여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로 발송한다는 것을 의미함. 예상 소요시간은 최소 3주. 그러나 최종결정은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에서 결정하며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은 통보를 받고,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됨. 즉, 주한도미니카공화국 영사직원에게 비자 승인 결정권이 없음. 이러한 이유로 신청인이 비자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환불이 안 되는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기를 강력히 권유하며, 혹 비자 취득 소요시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져서 미리 구입한 항공권에 차질이 생긴 경우에 대해서는 대사관의 책임이 없음을 미리

공고함.

**18. 비자 수수료**

인터뷰 당일 송금 영수증 지참 하셔서 오시길 바랍니다.

외화계좌인 관계로 인터넷 뱅킹은 어려우십니다.

가까운 KEB하나은행에 가셔서 송금하셔야 합니다.

- 수취인: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
- 미화 U\$100.00
- KEB하나은행
- 계좌번호: 201-890010-11338

다음 페이지 중요사항 1,2,3 반드시 숙지 부탁드립니다.

**중요사항1:**

취업하려는 회사가 Zonas Franca (자유무역수출공단)

Zonas Franca의 운영자

Zonas Franca의 회사

Zonas Franca 지역에 투자한 회사

위에 해당하는 회사인 경우라면, Consejo Nacional de Zonas Franca de Exportacion(CNZFE) 에서 증명서(Certificacion del Consejo Nacional de Zonas Franca de Exportación) 를 발급 받아오셔야 합니다.

**중요사항2:**

신청인의 회사가 EMPRESA MULTINACIONAL O TRANSNACIONAL(다국적회사)이며,  
(1년이상 거주 경우)

자회사 혹은 모회사와의 고용계약서 및 직책과 원래 귀속된 모회사로부터 보수가 기재된 서신으로 확인서 제출 (예: 모회사가 한국이면, 한국어로 된 계약서를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공증, 한국 법무부 아포스티유 필 (예: 모회사가 미국이면, 영문을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공증, 미국 외교부 아포스티유 필 ) 만일, 계약서의 경우 원본으로 제출 할 수 없을 경우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사본일 경우라도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필.

(1년미만 거주 경우)

모회사가 도미니카공화국으로 파견하는 피고용주의 보직과 직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 (영문, 국문인 경우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필)

**중요사항3:**

NM1비자를 취득한 자는, 일단 도미니카공화국 영토에 도착하게 되면 취득한 임시거주비자 관련 수속절차를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서류를 가지고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에 방문하여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이민법 No.285-04 규정에 의거 이민청에서 필요로하는 수속과정임.

비자 취득 시 반환 받은 서류를 지참하고 도미니카공화국에 입국하여 30일 이내에 모든 서류를 스캔(jpg화일)하여 이민청 사이트(<http://www.migracion.gob.do>)를 통해 등록 및 승인 요청 --> 승인일정을 통보 받은 신청자는 모든 서류 원 본 및 복사본을 이민청에 직접 제출(수속기간 90일 소요) 해야 합니다.

위의 이민청 수속 과정이나, 이민관련 정보는

주도미니카공화국 한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https://overseas.mofa.go.kr/do-ko/brd/m\\_5870/list.do](https://overseas.mofa.go.kr/do-ko/brd/m_5870/list.do))

회사로고가 있는  
종이(레터지)

PAPEL TIMBRADO DE LA EMPRESA(회사로고)

### Carta de Solicitud de Visado

Seúl, Corea del Sur  
날짜 de 월 del 년도

**Señores**  
**Embajada de la República Dominicana**  
**en Corea del Sur**

Estimados Señores:

Luego de un cordial saludo, me dirijo a ustedes con el motivo de solicitar la expedición del Visado **NM1** con el nombre 신청인 이름, 국적nacionalidad Coreana,portador del pasaporte de identidad No. 00000000 (여권번호) y residenteen (현재거주지).

El motivo de esta solicitud se debe a que yo viajaré a la República Dominicanapara trabajar en 회사 이름, 회사 주소지와 이름 기재 직책, 분야 등등 por 체류 기간.

Muy atentamente,

-----  
Firma del representante de la empresa  
대표자 서명

Sello de la Empresa q  
ue incluya RNC #  
회사 RNC 번호가 있는  
도장 찍음

- 만약, 동반 가족이 있다면, 다음 페이지 참고

**Carta de Solicitud de Visado**

Seúl, Corea del Sur  
날짜 de 월 del 년도

**Señores  
Embajada de la República Dominicana  
Corea del Sur**

Luego de un cordial saludo, me dirijo a ustedes con el motivo de solicitar la expedición del Visado NM1 con el nombre 신청인 이름, nacionalidad Coreana, portador del pasaporte de identidad No. 00000000 (여권번호) y residente en (현재거주지).

El motivo de esta solicitud se debe a que yo viajaré a la República Dominicana para trabajar en 회사 이름, 회사 주소지와 이름 기재 직책, 분야 등등 por 체류 기간 con mi familia.

Asimismo, solicito los visados de DPM para mi familia:

신청인과의 관계	이름(Nombre)	여권번호(No.Pasaporte)	국적(Nacionalidad)	직업상태(Ocupación)
Esposo/a(배우자)	XXX			
Hijo(아들) Hija (딸)	XXX			

Muy atentamente,

(Firma/본인 이름과 서명)

-----